

취·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

제정 : 2017. 12. 08.

개정 : 2021 .03. 05.

담당 : 취·창업지원센터(950-5524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직무)	제3조(조직)	제4조(취·창업활동위원회)
제5조(재정)	제6조(운영세칙)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직제 및 사무분장 제26조에 규정된 취·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센터에서는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취·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(개정 21.03.05)
 - 가. 진로 및 취·창업프로그램 개발
 - 나. 취·창업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
 - 다. 진로 및 취·창업 교과목 계획 및 운영
 - 라. 현장실습 및 인턴십 계획 및 운영
 - 마. 각종 진로·취업 검사 및 상담
 - 바. 학과별 취·창업활동 지원
 - 사. 취업박람회 및 기업 채용설명회 개최
 - 아. 각종 취·창업관련 경시대회 및 공모전 운영
 - 자. 상담·프로그램 연구 및 성과 분석
 - 차. 졸업생 대상 경력개발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
 - 카. 창업동아리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 - 타. 글로벌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
 - 파. NSLB 교육정신에 입각한 위기학생 지원프로그램 운영
 - 하. 장애학생, 유학생, 새터민 등 소수학생 지원프로그램 운영
2. 취·창업 지원 행정(개정 21.03.05)
 - 가. 정부 주도 취업통계조사
 - 나. 취·창업활동위원회 운영
 - 다. 취·창업지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
 - 라. 민간취업지원기관과의 협력

- 마. 학생지원 유관부서와의 협력체계를 통한 취·창업활동 행정지원
- 바. 취·창업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, 성과분석, 평가회, 연차보고 등 환류체계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
- 사. 취·창업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우수사례 공유

3. 그 밖에 취·창업지원에 관한 업무

제3조(조직)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을 두고, 컨설턴트, 취업지원관, 연구원, 조교, 행정인턴을 둘 수 있다.
- ③ 컨설턴트, 취업지원관, 연구원은 취·창업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.(신설 21.03.05)
- ④ 컨설턴트, 취업지원관, 연구원은 학과를 전담하여 담당할 수 있다.(신설 21.03.05)
- ⑤ 센터에 학생상담, 취업교육 및 지도, 연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력교수, 자문위원,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취·창업활동위원회)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취·창업활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재정) 센터의 예·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회계규칙에 따른다.(신설 21.03.05)

제6조(운영세칙)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.